

성과상여금지급 시행세칙

제정	2005. 05. 12
개정	2005. 12. 02
개정	2006. 12. 27
개정	2008. 01. 24
개정	2009. 01. 30
개정	2010. 12. 22
개정	2012. 02. 13
개정	2015. 06. 30
개정	2016. 01. 04
개정	2016. 03. 10
개정	2016. 09. 28
개정	2017. 12. 19
개정	2022. 09. 0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적용범위)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2 장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대표이사 및 2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 2016.9.28., 2017.12.19.>

1. 직원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17.12.19.>
2. 휴직, 병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 단,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는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6.1.4., 2017.12.19.>
3.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4., 2017.12.19.>
4.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기준등급(B등급)의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5. 대표이사의 경우,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재임한 연도는 재임기간으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2.19.>

②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에 업무 및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최하등급을 지급하고, 경징계를 받은 직원은 기준등급(B등급) 이하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4., 2016.1.4., 2017.12.19.>

③ 비위, 횡령,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0.12.22., 개정 2017.12.19.]

④ 위의 각 호 외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16.9.28., 개정 2017.12.19.>

제4조(지급단위 및 방법) 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계약서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2.2.13., 2017.12.19.>

② 직원의 경우에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인사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며, B등급을 기준비율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09.1.30., 2012.2.13., 2017.12.19.>

제5조(지급등급) ① 성과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S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공무직 1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12.2.13., 2022.9.8.>

④ 삭제 <2015.6.30.>

제6조(지급기준액) ① 성과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13., 2016.3.10.>

②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중 6개월 이상 상위직급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인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상위직급의 지급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7조(평가방법) ① 개인별 지급등급은 인사규정 제34조(근무평정)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 반영비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0.12.22., 2012.2.13.>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외에 재단의 성과 평가결과(예 :부별 목표달성도 평정점)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12.2.13.>

③ 이사장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제8조(다면평가) ① 삭제 <2012.2.13.>



② 삭제 <2012.2.13.>

제9조(순위명부 작성) <삭제 2017.12.19.>

제10조(성과상여금 지급) ① 이사장은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를 완료하고,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확정된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정 2006.12.27., 개정 2016.9.28.>

②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12.27., 2009.1.30., 2010.12.22., 2012.2.13., 2016.9.28., 2017.12.19.>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직원

적 용 대 상	대표이사 및 직원 (공무직 포함)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 급 등 급	지 급 비 율	지 급 액
S등급	상위 10% 이내	지급기준액 × 기준비율(100%)
A등급	10% 초과 ~ 30% 이내	지급기준액 × 기준비율(85%)
B등급 (경영평가 지급기준비율)	30% 초과 ~ 70% 이내	지급기준액 × 기준비율(70%)
C등급	70% 초과 ~ 90% 이내	지급기준액 × 기준비율(55%)
D등급	90% 초과 ~ 100%	지급기준액 × 기준비율(40%)

- ※비고 : 1. 대표이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지급기준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2.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지급기준비율과 기준비율(B등급, 70%)과의 배수차이를 계산하여 모든 등급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 후 차등지급한다. 단,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5.12.2., 2008.1.24., 2010.12.22., 2012.2.13., 2016.9.28., 2017.12.19.>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단위 :원)

적 용 대 상	지 급 기 준 액
대 표 이 사 및 직 원 (공무직 포함)	기 본 연 봉 월 액

[별표 3]

삭제 <2012.2.13.>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삭제 2017.12.19>

